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2017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

(2017. 5. 16)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 준 상]

2017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 2017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7년 4월 27일
- 제출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7년 5월 2일

4. 관계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 제18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5. 제안이유

-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구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해 『구립어린이집 확충대상 부동산(합정동 443-6) 매입 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6. 주요 제안 내용

-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 및 구청장 공약사항인 「안심보육 확대를 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 우리구도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금년도의 경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환신청을 받아 자체적 격심사 및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민간어린이집(도토리어린이집)에 대하여 부동산 매입을 통한 구립어린이집 전환방식으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함.
- 부동산 매입을 통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경우 시비보조사업(시비 95%, 구비 5%)으로 적은 구 예산 투입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 매입함으로써 구유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해당 부동산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2014년에 준공된 민간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전면공사가 필요 없이 간단한 구조변경 공사 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개원 운영이 가능함.

7.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구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높지만 그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필요함.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합정동 443-6에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환·설치하여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 요즘은 결혼 후 아이를 낳기 전부터 아이를 어디에 믿고 맡길 것인지 고민부터 하게 되는 시대로 서울시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출산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또한 국비나 시비를 매칭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유재산 증가와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출산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어린이집 관리·운영비가 증가되어 구(區)의 예산부담이 증가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하여 매입 시 뿐만 아니라 매입 후 관리·운영 문제까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 매입해야 할 것이며,
- 또한, 기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구립어린이집 환경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규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6.3.28.]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타법개정]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이란 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폐지·변경 및 공공시설

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리계획 : 취득에 관한 계획, 처분에 관한 계획
- 관리계획 변경 : 취득에 관한 변경, 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
- 취득 : 매입, 기부체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타법개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달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어린이집 현황(2017. 5. 1.)

구분	계	구립	법인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방과후	비고
시설수	214	58	3	54	80	4	10	5	
운영	213	58	3	54	79	4	10	5	
	1	0	0	0	1	0	0	0	
미운영/휴지		착한나라 어린이집 (전환)			푸르미 어린이집 (폐지)				
보육정원	9,226	3,680	142	2,965	1,437	153	650	199	
보육현원	8,129	3,461	105	2,657	1,243	141	397	125	
	계	1,923	684	24	559	467	44	130	15
	원장	213	58	3	54	79	4	10	5
종사자수	보육교사	1,362	489	18	411	315	29	91	9
	조리사	177	69	3	41	40	5	19	-
	기타종사자	171	68	-	53	33	6	10	1

*푸르미어린이집(가정) : 3.31. 폐지인가
 *착한나라어린이집(민간) : 5.1. 국공립 전환

전월대비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2017. 5. 1.)<운영중인 곳만>

구분	계	구립	법인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방과후	비고
전월 (2017.4.)	개소	215	57	3	55	81	4	10	5
	현원	8082	3,380	107	2,703	1,219	142	402	129
현월 (2017.5.)	개소	213	58	3	54	79	4	10	5
	현원	8,129	3,461	105	2,657	1,243	141	397	125
현원 증감	47	81	-2	-46	24	-1	-5	-4	
현원 증감률(%)	0.58	2.34	-1.90	-1.73	1.93	-0.71	-1.26	-3.20	

정원 대비 현원 비율(%)(2017. 5. 1.)

구분	계	구립	법인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방과후	비고
보육정원	9,226	3,680	142	2,965	1,437	153	650	199	
보육현원	8,129	3,461	105	2,657	1,243	141	397	125	
현원/정원 (%)	88.1	94.0	73.9	89.6	86.5	92.2	61.1	62.8	

평가인증	계(174) 국공립(50) 가정(66) 민간(44) 법인단체(3) 부모협동(4) 직장(7)
서울형	계(38) 국공립(0) 가정(17) 민간(18) 법인단체(0) 부모협동(3) 직장(0)